

# Sistema de Información Legal y Editor de Proyectos Legislativos

de uso fácil, rápido y preciso para todos

Julio de 2017

**Oficina de Coordinador  
de Planificación del  
Ministerio de Legislación  
Gubernamental**

(Jung Syung-Taek, Oficina de  
Información sobre Legislación)





# Contenido

- I.** Perspectiva general del sistema de información legal
- II.**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 III.** Editor de proyectos legislativos
- IV.** Programa de actualización de leyes y ordenanzas promulgadas
- V.** Propuesta de soluciones a problemas y apoyo tecnológico ofrecido a un país extranjero

# I. Perspectiva general del sistema de información legal



# 1. Visión y objetivos del servicio de información leg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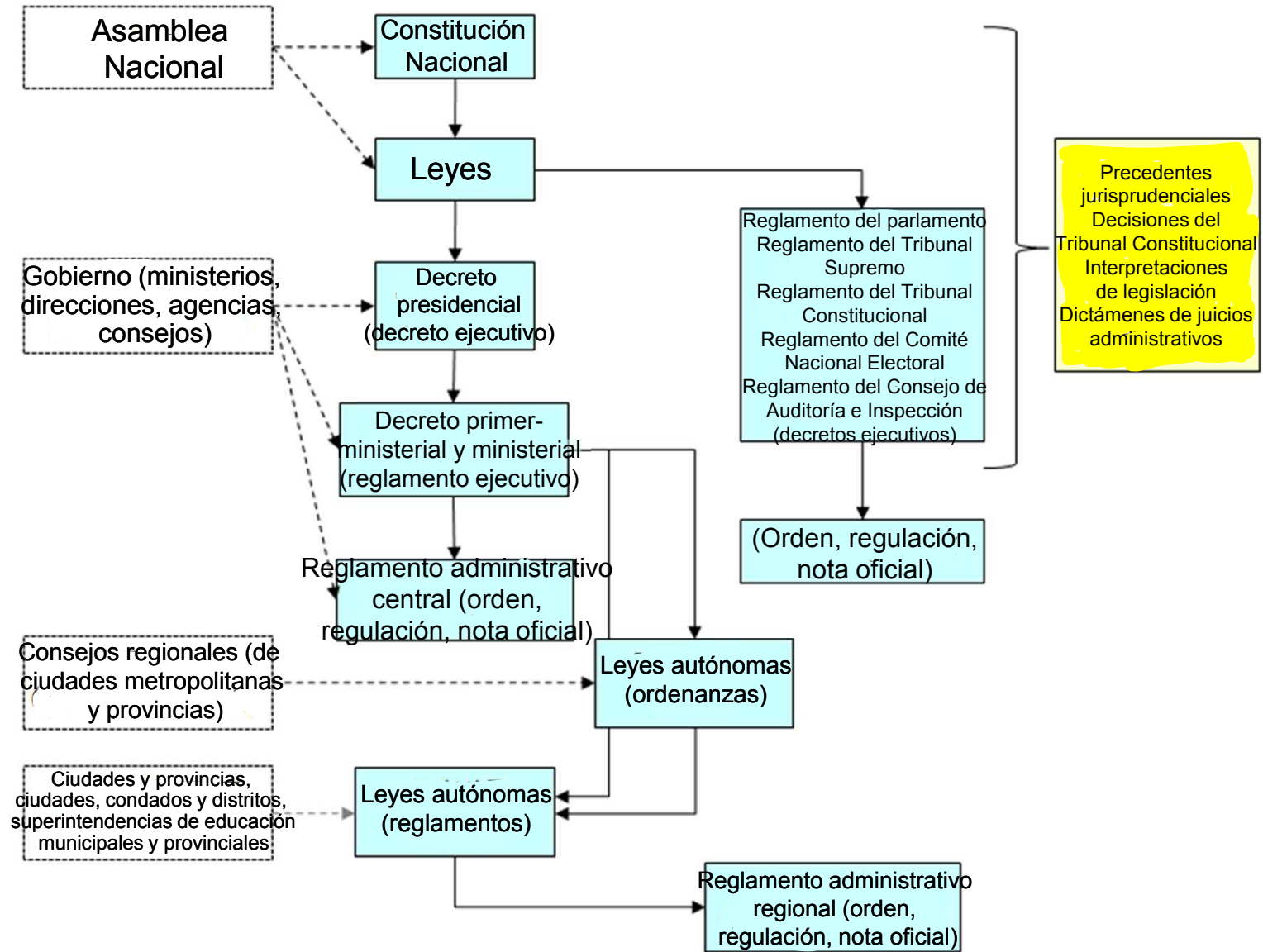


\* LO: Leyes y Ordenanzas

## 2. Historia de servicios de información legal

Período	Medio de servicios	Contenido de servicios
1954 ~ 1998	<b>Servicio de LO vigentes</b> <b>(papel+redes de comunicación)</b>	○ Publicación y distribución de códigos vigentes (una adición al mes de nuevas LO, colección compuesta por 78 tomos)
		○ Servicio a través de las redes de comunicación en PC tales como Chollian y la Red de Administración Gubernamental ( <b>LO vigentes</b> )
1999 ~ 2007	<b>Servicio centrado en LO y precedentes jurisprudenciales</b> <b>(internet)</b>	○ Inicio del servicio por internet (LO vigentes)
		○ Centro Integral de Información legal (LO antiguas y vigentes, precedentes)
2008 ~ 2011	<b>Cimentación de bases para un servicio integral</b> <b>(interne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eación del <b>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b> y Desarrollo del <b>Sistema de Actualización de LO Promulgadas</b></li> <li>○ Creación de base de datos sobre, y servicio al público de, decisiones de inconstitucionalidad, interpretaciones de LO, juicios administrativos, etc..</li> <li>○ <b>Desarrollo del editor de proyectos legislativos</b> que realiza una redacción automática del texto de enmiendas y tabla comparativa entre los artículos modificados y los vigentes, necesarios para la elaboración de proyectos de LO.</li> </ul>
2012 ~ Presente	<b>Servicio integral de información legal</b> <b>(móvi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nauguración del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b>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li> <li>○ Lanzamiento del servicio integral de información legal, incluyendo reglamentos administrativos, reglamentos autónomos, tratados, etc.</li> <li>○ <b>Desarrollo de aplicación móvil</b> (para IOS y Android)</li> <li>○ <b>Constante exploración de nuevos servicios de información</b> sobre leyes antiguas y vigentes, leyes superiores e inferiores, glosario de términos jurídicos, códigos electrónicos, impresión de leyes y ordenanzas, estructura del sistema legal y del sistema de precedentes jurisprudenciales, etc.</li> <li>○ <b>Ampliación de servicio integral de información legal</b> a incluir reglamentos administrativos, autónomos, etc.</li> </ul>

### 3. Estructura y tipos de información legal



## 4. Contenidos de información legal

### ■ Información sobre LO

- ◆ Información legislativa : legislación vigente y su evolución, tratados, LO contemporáneas (antes del establecimiento del gobierno moderno)
- ◆ LO inferiores : Reglamentos administrativos de entidades administrativas del gobierno central, leyes autónomas de los gobiernos autónomos regionales
- ◆ Precedentes, etc. : precedentes jurisprudenciales, precedentes constitucionales, interpretaciones de LO, dictámenes de juicios administrativos
- ◆ Términos legislativos : términos jurídicos, definiciones de LO, términos en inglés, etc..
- ◆ Tablas anexas, formularios : Tablas anexas de LO, reglamentos administrativos y autónomos. Formularios.
- ◆ Información sobre LO relativa a la vida cotidiana : conocimientos sobre LO por ámbitos de la vida y edades de los usuarios, información legal traducida en idiomas extranjeros, etc..
- ◆ Información sobre los sistemas jurídicos extranjeros : información legal y sistema legislativo de países extranjeros, estudios relacionados

### ■ Información legislativa

- ◆ Actividades legislativas en la Asamblea Nacional y ministerios del gobierno central, proyectos de LO y anuncios previos de legislación, diversos informes sobre revisiones, etc.



# 5. Estructura del sistema de información legal

Se trata de una Ventanilla Única de todos los servicios de información legal, desde la redacción de proyectos de LO, promulgación de LO, actualización de LO promulgadas, y ofrecimiento de información legal

Centro de Apoyo a la Legislación Gubernamental (funcionarios de gobiernos central y regionales)

(www.lawmaking.go.kr)

Información sobre LO actualizadas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para el público en general)

(www.law.go.kr)

◆ **Compilación y ofrecimiento de información legal**

◆ **Redacción de proyectos de 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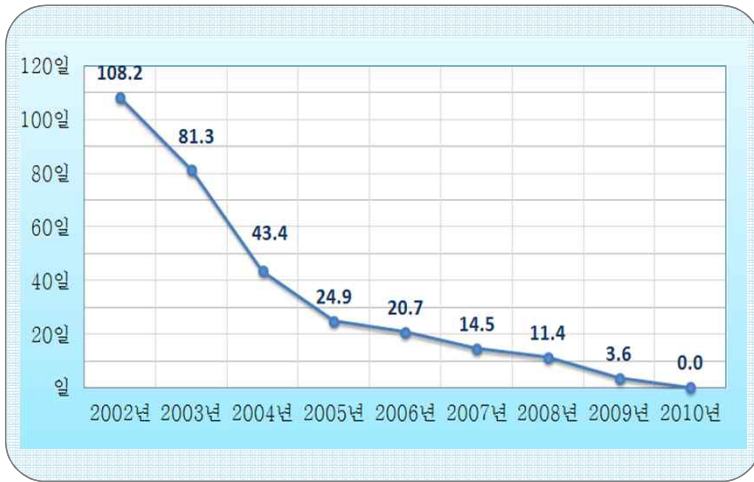
◆ **Actualización de LO promulgadas**

기관별	분야별	최신 법령정보	발령	행정규칙	판례	자치법규	자치법규 위임 법령	규제 관련 법령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	2017.1.23.	건설법	건설법	건설법	2017.1.17.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	2017.1.23.	건축을 예나지출을등금 인증 및 재료해나지...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1.17.
교육부	부산광역시	건축을 예나지출을등금 인증 및 재료해나지...	국토교통부...	2017.1.2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법	2017.1.17.
국방부	대구광역시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7.1.20.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불만경쟁연구회법	2017.1.17.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2017.1.20.	대통령령	2017.1.20.	보건환경연구회법	2017.1.17.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대통령령	2017.1.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2017.1.17.
농림축산식품부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울산광역시							
대리양조과학부	세종특별자치시							
법무부	경기도							
보건복지부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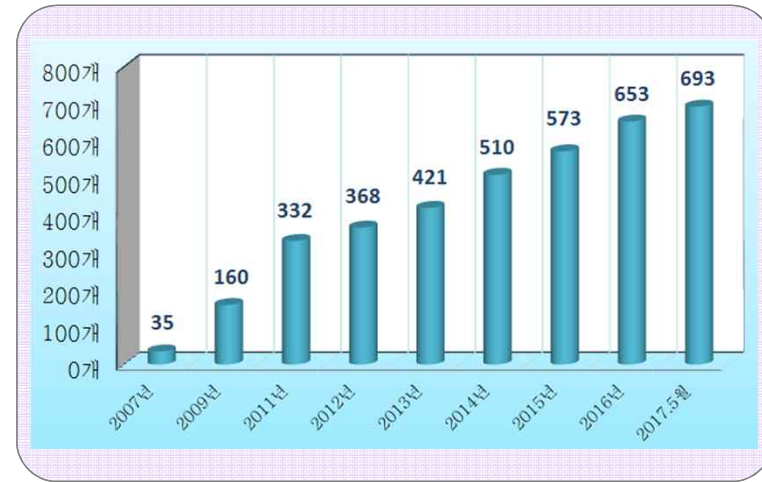


## 6. Logros del servicio de información leg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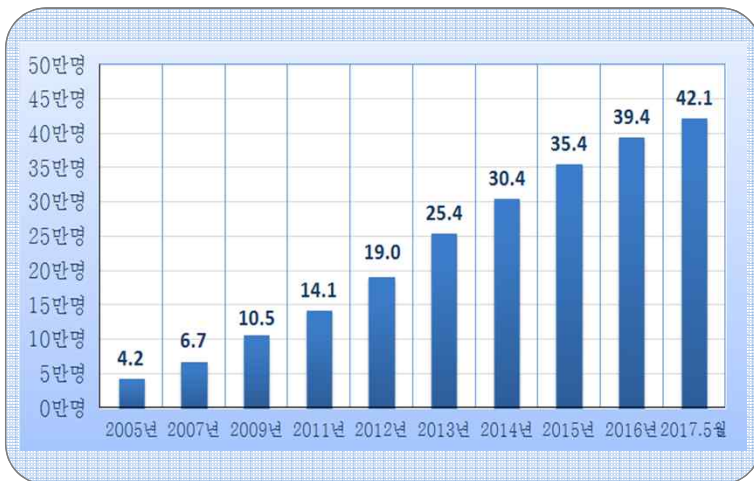
Momento de actualización de LO promulgadas:  
el mismo día de promulgación



Nº de entidades distribuidoras de información legal: 693



Nº de visitas al día: 421 mil



Nº de usuarios de aplicación móvil: 1,65 millones



## II.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 1.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등	별표·서식	학칙·규정	법령기타
----	------	------	---------	-------	-------	------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이제 법령과 자치법규를 한번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자치법규 | 자동차



1948년 이전 공포법령 중 원하시는 법령을 찾지 못하신 경우  
관보나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해보세요

관보 검색

기관별	분야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교육부	부산광역시
국방부	대구광역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농림축산식품부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울산광역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특별자치시
법무부	경기도
보건복지부	강원도
<a href="#">더보기</a>	<a href="#">더보기</a>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	판례	자치법규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	2017.1.2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대장이기				
				2017.1.20.

구분	20	21	22	23	24	25	26
법령	시행 21 공포 13	시행 3	-	시행 2 공포 2	-	-	시행 1
법규	규칙 4	-	-	-	-	-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www.law.go.kr](http://www.law.go.kr))

자치법규 위임 법령	규제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2017.1.17.
건축법	2017.1.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1.17.
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	2017.1.17.
환경보전법	2017.1.17.
보건환경연구원법	2017.1.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2017.1.17.

알림판

긴 법률명의 약칭이 궁금하다면?

현행 법률명의 약칭 목록

# 4. Tipos de servicios de información legal

<span style="border: 2px dashed red; padding: 2px;">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법령</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행정규칙</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자치법규</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판례·해석례등</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별표·서식</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학칙·규정</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법령기타</span> </span>							
<input checked="" type="radio"/> 현행법령 <input type="radio"/> 면허법령 <input type="radio"/> 근대법령 <input type="radio"/> 영문법령 <input type="radio"/> 중문법령 <input type="radio"/> 최신법령 <input type="radio"/> 조약 <input checked="" type="radio"/> 상세검색 <input type="text"/> 분류검색							
법령명    법령전문    조문내용    조문제목    부칙    제정·개정문 <input type="text"/> 조회이력 <input type="text"/> 어려운용어신고 <input type="checkbox"/> 새창(목록)							
> 총 33건 <span style="float: right;">가나다별 ▼    선택    전체 ▼    선택    50 ▼    선택</span>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여객 <b>자동차</b> 운수사업법	2016. 1. 19.	법률	제 13800호	2017. 1.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	여객 <b>자동차</b>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 1. 20.	대통령령	제 27798호	2017. 1.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	여객 <b>자동차</b>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7. 1. 20.	국토교통부령	제 400호	2017. 1.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4	여객 <b>자동차</b>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 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5	<b>법</b> <b>자동차</b> 관리법	2017. 1. 17.	법률	제 14546호	2017. 7.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	<b>자동차</b>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	2016. 12.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	<b>자동차</b> 관리법 시행령				2017. 1.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8	<b>자동차</b> 관리법 시행규칙				2017. 1.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	<b>자동차</b> 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 규칙				2016. 9.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	<b>자동차</b> 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2015. 11.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	<b>자동차</b> 등록규칙				2016. 12.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	<b>자동차</b> 등록령				2016. 12.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3	<b>자동차</b>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15. 5. 18.	법률	제 13287호	2015. 11. 19.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국토 교통부, 법무부, 해 양수산부
14	<b>자동차</b>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2015. 11. 4.	대통령령	제 26613호	2015. 11. 19.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국토 교통부, 법무부, 해 양수산부
15	<b>자동차</b> 및 <b>자동차</b>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17. 1. 9.	국토교통부령	제 386호	2017. 1.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6	<b>자동차</b> 손해배상 보장법	2016. 12. 20.	법률	제 14450호	2017. 1.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Leyes y Ordenanzas    Reglamentos administrativos  
Reglamentos autónomos  
Precedentes jurisprudenciales/interpretaciones legales, etc.  
Tablas anexas/formularios  
Reglamentos y normativas escolares    Otras LO



# 5. Modos de búsqueda de información legal

The screenshot shows the KOLIS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Navigation Bar:** 법령 (Law), 행정규칙 (Administrative Rules), 자치법규 (Local Laws), 판례·해석례등 (Cases/Interpretations), 별표·서식 (Annexes/Forms), 학칙·규정 (School Rules/Regulations), 법령기타 (Other Laws).
- Search Filters:**
  - 현행법령 (Current Law) - Selected
  - 연혁법령 (Historical Law)
  - 근대법령 (Modern Law)
  - 영문법령 (English Law)
  - 중문법령 (Chinese Law)
  - 최신법령 (Latest Law)
  - 조약 (Treaty)
  - 상세검색 (Detailed Search)
  - 분류검색 (Categorized Search)
- Search Results:**
  -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6.] [국토교통부령 제387호, 2017.1.6., 일부개정]
  - 9.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16.9.7.] [국토교통부령 제360호, 2016.9.7., 일부개정]
  - 10.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30.] [국토교통부령 제255호, 2015.11.30., 일부개정]
  - 11.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4호, 2016.12.30., 일부개정]
  - 12.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42호, 2016.12.30., 일부개정]
  - 1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287호, 2015.11.19., 일부개정]
  - 14.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13호, 2015.11.19., 일부개정]
  - 1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9.]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2017.1.9., 일부개정]
  - 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7.1.1.] [법률 제14450호, 2016.12.29., 일부개정]
  - 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43호, 2016.12.29., 일부개정]
  - 1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2.]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 19.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2.2.] [환경부령 제594호, 2015.2.2., 일부개정]
  - 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21.] [법률 제13038호, 2015.12.29., 일부개정]
  -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규칙 시행령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49호, 2016.3.22., 일부개정]
  - 2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시행 2016.3.22.] [국토교통부령 제388호, 2016.3.22., 일부개정]
- Callout Box (Search Methods):**
  - 👉 Búsqueda simple**  
LO vigentes, LO antiguas (antes de la enmienda), LO de la edad contemporánea, LO en inglés, LO en chino, tratados
  - 👉 LO actualizadas**  
LO promulgadas, LO vigentes, LO a implementarse, LO derogadas, LO provisionales, LO efectivas, artículos provisionales, artículos inconstitucionales
  - 👉 Búsqueda avanzada**  
Permite buscar información legal bajo diversas condiciones de búsqueda
  - 👉 Búsqueda categorizada**  
Búsqueda por entidades (ministerios y agencias del Gobierno central), búsqueda por ámbitos legales

# 6. Espectro de búsqueda de información legal

현행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영문법령  중문법령  최신법령  조약

법령명  법령분문  조문내용  조문제목  부칙  제정·개정문

새창(목록)

새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6.] [국토교통부령 제387호, 2017.1.6., 일부개정] 최종공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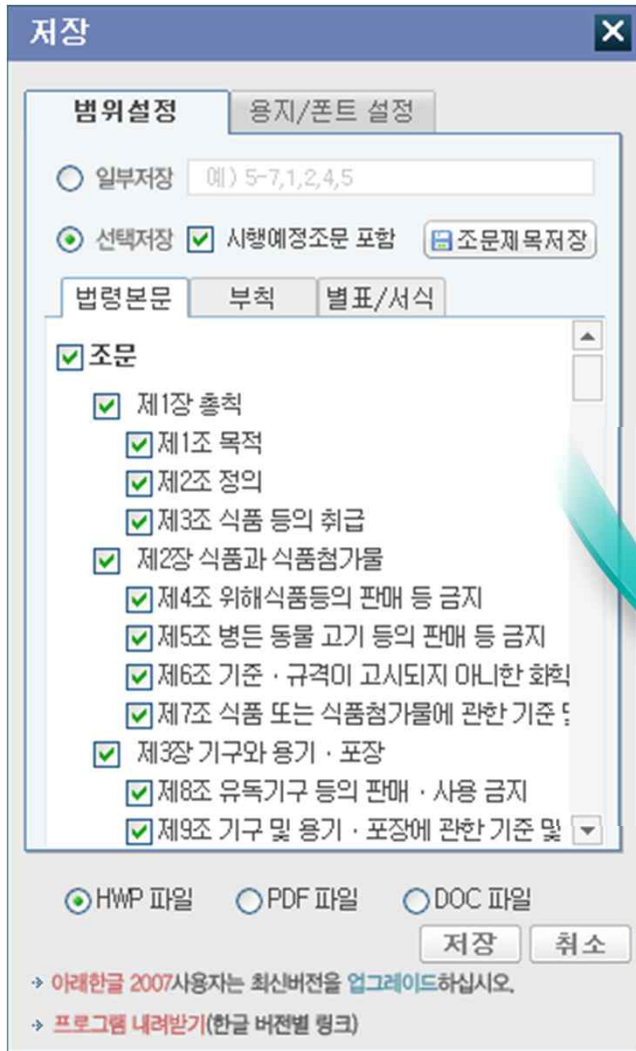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9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7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 자동차안전기준), 044-201-3853

- Nombre de LO**  
- Búsqueda de la palabra clave ingresada en todos los nombres de LO
- Texto completo de LO**  
- Búsqueda de la palabra clave ingresada en todo el texto completo de LO
- Contenido de artículos**  
- Búsqueda de la palabra clave ingresada en los artículos de todas las LO
- Título de artículos**  
- Búsqueda de la palabra clave ingresada en los títulos de todos los artículos
- Reglas suplementarias**  
- Búsqueda de la palabra clave ingresada en las reglas suplementarias de todas las LO
- Nuevas legislaciones y enmiendas promulgadas**  
- Búsqueda de la palabra clave ingresada en el contenido de los boletines gubernamentales (promulgaciones) sobre LO

[관] [연]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법] 별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7.>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Modo de guardar o imprimir archivos de información legal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90호, 2010.12.31, 일부개정]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に必要な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に必要な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개정 2011.4.30>

**제53조(정기적성검사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동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1.23, 2010.12.31>  
1. 운전면허증  
2. 병력신고서  
②제1항제3호에 불구하고 건강검진결과보고서에 제4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항목에 관한 검사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정기적성검사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동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1.23, 2010.12.31>  
1. 운전면허증  
2.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특수·다중차량 운전면허의 경우 제외)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서(다중차량 운전면허의 경우 제외)  
②삭제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2.31>  
[시행일 : 2011. 1. 1] 제53조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09.11.23>  
1. 교육과정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3. 운영기준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09.11.23, 2011.4.30>  
1. 교육과정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Seleccionar y guardar/imprimir archivos de información legal por artículos



# 8. Verificación de datos vinculados a la información legal provista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등 발표·서식 학칙·규정 법령기타

○헌법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영문법령 ○중문법령 ○최신법령 ○조약

상세검색 분류검색

법령명 법령분문 조문내용 조문제목 부칙 제정·개정문

조회이력 어려운용어신고 새창(목록)

건축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16호, 2016.2.3.]

10. 제4조 건축위원회

11. 제11조 건축허가

12. 제20조 가설건축물

13. 제52조의2 실내건축

14. 제78조 감독

건축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5호, 2017.1.1.]

15. 제4조 건축위원회

16. 제11조 건축허가

17. 제20조 가설건축물

18. 제52조의2 실내건축

19. 제78조 감독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7호, 2017.1.20.]

20. 제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21. 제6조 적용의 완화

22. 제15조 가설건축물

23.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25. 제118조 용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14.6.5.] [법률 제11865호, 2013.6.4.]

26. 제20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본문 개정이유 3단비교 신규법비교 법령체계도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4.>

◎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삭제 <2010.2.18.>

[전문개정 2008.10.29.]

□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 **제18조의3(공사감리자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 시장은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공사감리자를 모집·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4]

※ 이 조례, 규칙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16.11.14.] [인천광역시조례 제5728호, 2016.11.14.,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 **제18조의3(공사감리자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 시장은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공사감리자를 모집·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4]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96호, 2017.1.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En virtud del Decreto del Ministerio de Tierra,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Decreto del Ministerio de Tierra,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Ordenanzas de gobiernos municipales y provinciales

시·도의 조례




## 9. Servicio de glosario de términos jurídicos extraídos del texto de Leyes y Ordenanzas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법령용어**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으로서 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다만, 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부동산

용어명

총 98건 전체 이동

있는 기관

- 32. **부동산** 가격 전문성이
- 34. 무주**부동산**
- 35. 미등기**부동산**
- 36. **부동산**
-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3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령용어사전 | 법령정의사전 | 법령한영사전

**법령정의사전(3건)**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출처 :

- 지방세법 [법률 제10469호, 2011. 3.29, 일부개정]
- 제6조 (정의)
-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더보기

↳ **부동산**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출처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Términos usados en el texto de leyes y ordenanzas + diccionarios de términos jurídicos publicados por editoriales privadas

# 10. Cualquiera puede compilar códigos electrónicos fácilmente

## 소방관계법령집

- ◆ 소방기본법
  - 법 소방기본법 [공포번호:제10014호]
  - 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공포번호:제22075호]
  - 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공포번호:제00155호]
- ◆ 소방시설공사업법
  -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포번호:제10385호]
  - 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공포번호:제22455호]
  -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공포번호:제00142호]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제22455호]
  - 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번호:제22075호]
  - 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번호:제00155호]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현 위험물안전관리법 [공포번호:제10219호]

목	
◆ 소방기본법	1. 소방기본법 2.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1. 위험물안전관리법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화재안전기준	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Cualquiera puede compilar, descargar y usar códigos electrónicos de manera fácil**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14호, 2010. 2. 4, 일부개정]

(3년비교표) 「도로교통법」

#### 3년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5호, 2010.7.23]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90호, 2010.12.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2011.4.30]
<p><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극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7.12.21. 2008.2.29. 2009.12.29. 2010.7.23&gt;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도도로법”에 의한 유도도로 다. “하이브리드 정비법”에 따른 하이브리드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에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안전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등 도로에 이인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량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형선”이라 함은 차량의 통행을 원활케 하기 위하여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의 황색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근거자료의 정의)</b>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lt;개정 2010.12.31&gt;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임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일시유치나 부대의 일시적인 이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제포 또는 피수용자, 피연행자의 호송·경비로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부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의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반에서 위험물자를 취급할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p>	<p><b>제2조(보행보조용 의자등의 기준)</b>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18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란 의자야판 안전장치가 정하는 최소기준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반동휠체어를 말한다. &lt;개정 2008.3.6. 2010.12.31&gt; [제목개정 2010.12.31]</p> <p><b>제3조(근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b> ① 법 제2조제20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은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법 제1호사칙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11.27. 2010.12.31&gt;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2호사칙의 긴급자동차 지정기준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중앙부에 비치된 곳에 붙여이</p>

# 11. Comparación de LO: entre leyes superiores e inferiores, vigentes y antiguas, etc.

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2010.7.23]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90호, 2010.12.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2011.4.30]
<b>제1장 총칙</b>		
<b>제1조(목적)</b>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계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1조(목적)</b>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12.29, 2010.7.23>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고속도로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	<b>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b>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0.12.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포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의 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공군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포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할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5. 국내의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유급관리에 사용되는 자동차	<b>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b>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6호각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0.12.31> [제목개정 2010.12.31]

**Leyes - Decretos ejec. - Reglamentos ejec.**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12호, 2010.12.7,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90호, 2010.12.31, 일부개정]
<b>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b>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9.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병역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b>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b> ① --- --- 제2조제20호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 ---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 --- 한정한다. 1. ~ 9. (현행과 같음) ② ---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
<b>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b> ①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b>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b> ① --- 구급자동차·혈액공급차량 --- --- 받고자 하는 ---
<b>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부담의 사유)</b> ①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4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생략) 2. 법 제68조제1항에 위반되는 교통안전시설의 철거·이전·손괴행위 3.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옮기거나 철거하는 경우 <신설> <신설>	<b>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부담의 사유)</b> -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 --- 1. (현행과 같음) 2.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옮기거나 철거하는 경우 3. 법 제68조제1항에 위반되는 교통안전시설의 철거·이전·손괴행위 4. 도로관리청 등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옮기거나 철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옮기거나 철거 또는 손괴한 경우
<b>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등)</b>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	<b>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등)</b> ① (현행과 같음) ② ---

**Leyes vigentes-antiguas**



## 12. Servicio integral de información sobre LO vigentes y antiguas

연혁	(영문)연혁
2. 예 공직선거법 [시행2013.1.1] [법률 제 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3. 예 공직선거법 [시행2012.7.1] [법률 제 11374호, 2012.2.29, 일부개정]	
4. 예 공직선거법 [시행2012.5.23] [법률 제 11373호, 2012.2.22, 타법개정]	
5. 예 공직선거법 [시행2012.3.15] [법률 제 11116호, 2011.12.29, 일부개정]	
6. 공직선거법 [시행2012.2.29] [법률 제 11374호, 2012.2.29, 일부개정]	
7. 공직선거법 [시행2012.1.17] [법률 제 11207호, 2011.12.29, 일부개정]	
8. 공직선거법 [시행2011.11.7] [법률 제 11071호, 2011.11.7, 일부개정]	
9. 공직선거법 [시행2011.9.30] [법률 제 11070호, 2011.9.30, 일부개정]	
10. 공직선거법 [시행2011.7.28] [법률 제 10981호, 2011.7.28, 일부개정]	
11. 공직선거법 [시행2010.11.18] [법률 제 10303호, 2010.5.17, 타법개정]	

**Mejora del modo de actualización de información legal**  
(Del orden de fechas de promulgación → al orden de fechas de implementación)

### Ley de Elección de Cargos Públicos

[Implementación 29 de Feb de 2012]

[Ley N°11374, 29 de Feb de 2012, enmendada parcialmente]

Art. 21(Número de miembros de la Asamblea Nacional)

- ① El número total de miembros de la Asamblea Nacional, incluidos los diputados representantes de circunscripciones electorales y diputados de representación proporcional, será de 299, siempre y cuando el número de representantes de jurisdicciones electorales de cada ciudad o provincia sea de tres como mínimo. <Enmiendas 16 de Feb de 2000, 12 de Mar de 2004>
- ② Se elegirá solo un diputado representante para cada circunscripción electoral.

Art. 21(Número de miembros de la Asamblea Nacional)

- ① El número total de miembros de la Asamblea Nacional, incluidos los diputados representantes de circunscripciones electorales y diputados de representación proporcional, será de 299, siempre y cuando el número de representantes de jurisdicciones electorales de cada ciudad o provincia sea de tres como míni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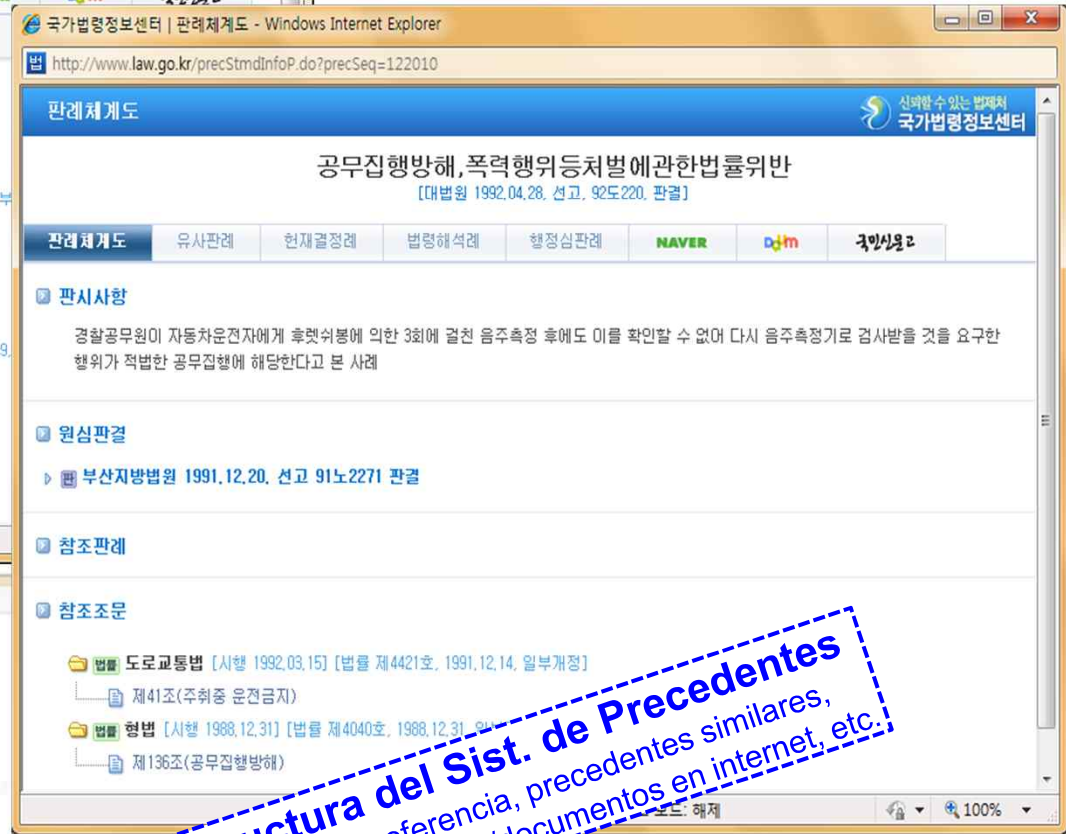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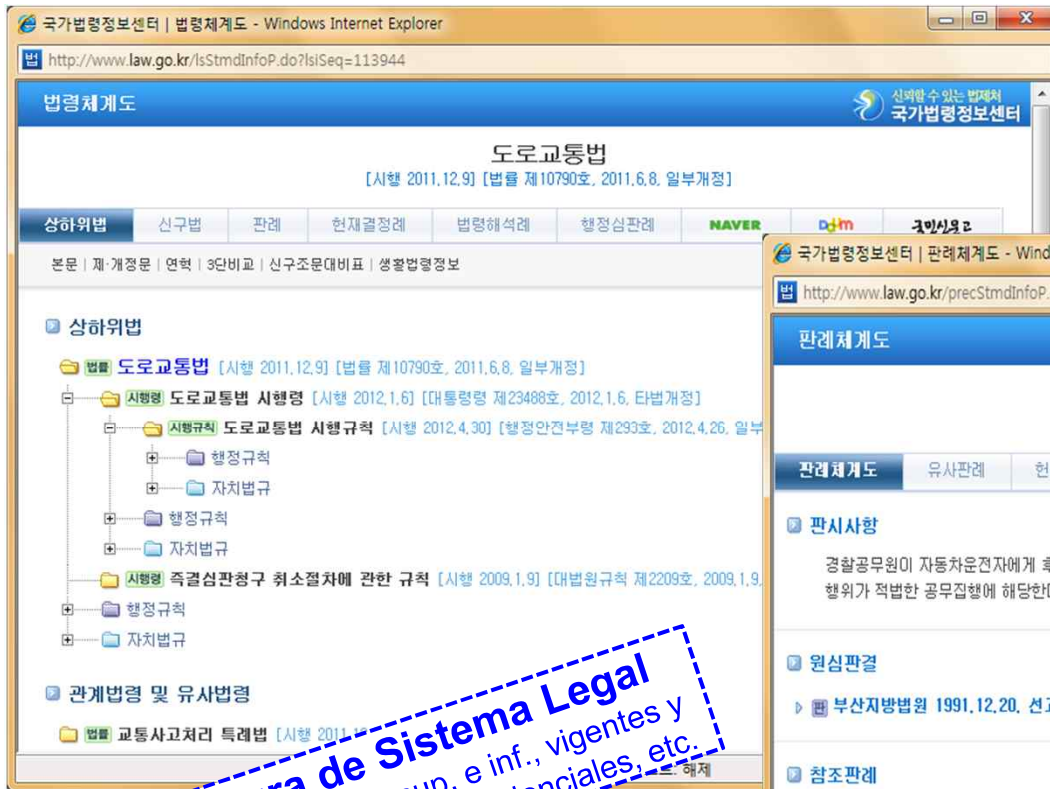
No obstante, y de manera excepcional, solo un diputado representará a la ciudad especial autónoma de Sejong.

<Enmiendas 16 de Feb de 2000, 12 de Mar de 2004, 29 de Feb de 2012>

- ② Se elegirá solo un diputado representante para cada circunscripción electoral.

[Fecha de implementación : 1 de Jul de 2012] Estipulación condicional del Inc.1 del Art.

# 13. Estructura del Sistema Legal, Sistema de Precedentes Jurisprudenciales, etc.




**Estructura de Sistema Legal**  
Serv. Integral de leyes sup. e inf., vigentes y antiguas, precedentes jurisprudenciales, etc.

**Estructura del Sist. de Precedentes**  
Cláusulas de referencia, precedentes similares, respuestas a preguntas/documentos en internet, etc.

## 14. Servicio de distribución de información legal fácil y útil entre el público

<http://www.law.go.kr/lsSc.do?menuId=0&query=%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AJAX>



- ▶ LO <http://www.law.go.kr/LO/leydetransportevial>
- ▶ Cláusulas <http://www.law.go.kr/LO/leydetransportevial/articulo4>
- ▶ Inf. histórica [http://www.law.go.kr/LO/leydetransportevial\(5453, 19971213\)/articulo4](http://www.law.go.kr/LO/leydetransportevial(5453,19971213)/articulo4)
- ▶ Precedentes [http://www.law.go.kr/precedentes/entregadecoches\(2008다50448, 20081113\)](http://www.law.go.kr/precedentes/entregadecoches(2008다50448,20081113))
- ▶ Glosario <http://www.law.go.kr/glosario/coche>

**Direcciones de dominio de información legal**

Información legal (lista, contenido) → conversión a XML, HTML → ofrecimiento en el formato Open API  
→ Descarga (desde cada entidad administrativa) → uso conjunto a través del sitio web o sistema de las entidades


**Open API**

# 15. Aplicación móvil del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Legal





# 16. Búsqueda de información legal a través del móvil


🔍

<
주차장법
★

위임조문 >
위임조례 >
국민불편신고센터 >

## 주차장법


[\[시행 2016.7.20.\] \[법률 제13804호, 2016.1.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06](tel:044-201-3806)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


🔍

<
주차장법
★


[\[전문개정 2010.3.22.\]](#)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0.3.22.\]](#)





### III. Editor de proyectos legislativos



# 1. Editor de proyectos legislativos (Leyes y Ordenanzas 3.1) ?

- ◆ Redacción del texto de proyectos legislativos, incluyendo proyectos de enmienda y tablas comparativas entre los artículos modificados y los vigentes
- ◆ Redacción de avisos oficiales de legislación y notificaciones para boletín oficial
- ◆ Redacción automática de proyectos legislativos
- ◆ Revisión de errores en el texto de proyectos legislativos
- ◆ Actualización de LO promulgadas

## 2. Objetivos de desarrol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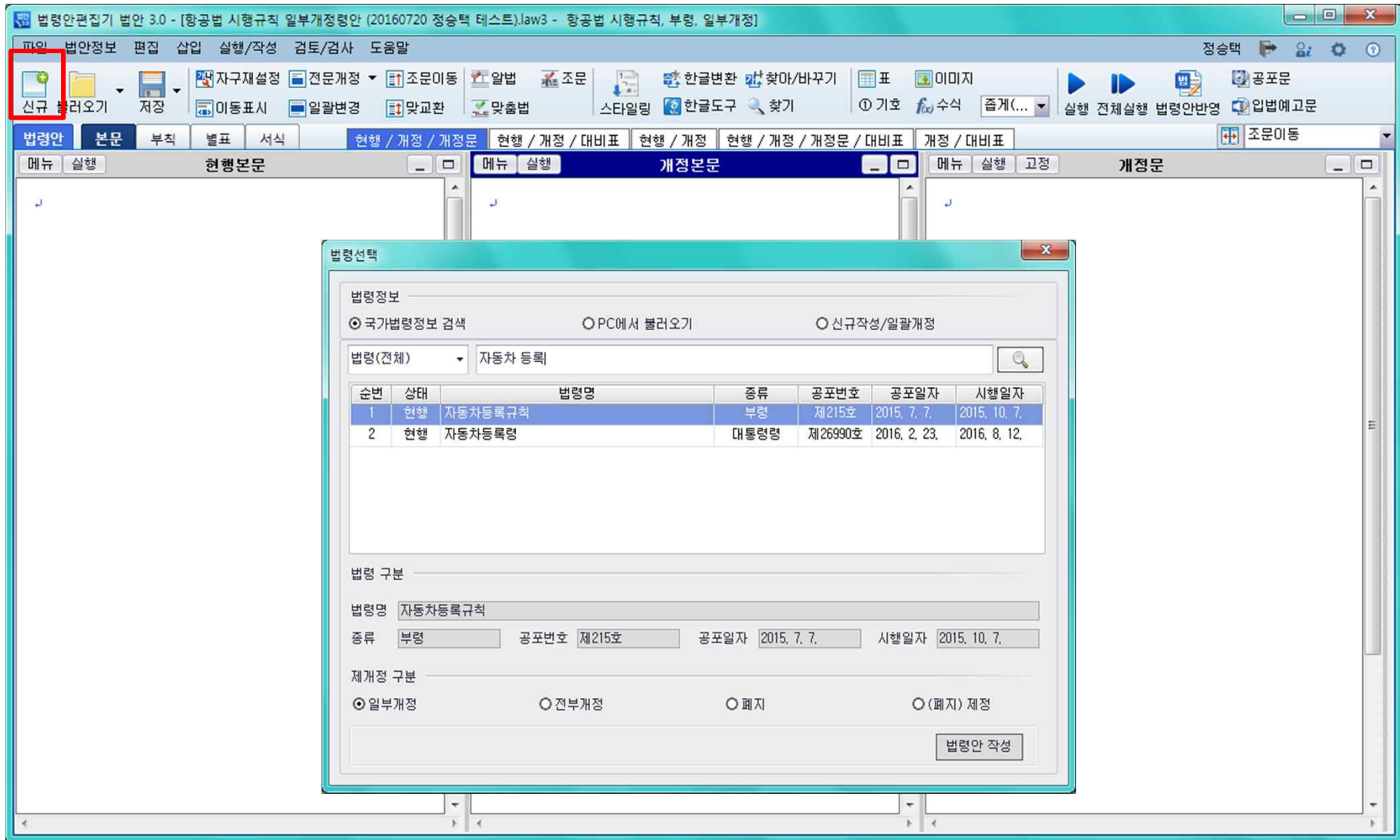
### Dificultades para redactar un proyecto legislativo

- El procedimiento de legislación gubernamental es complejo, ya que supone un largo proceso que se extiende desde la elaboración del respectivo proyecto de ley, su sometimiento a examen, consulta entre ministerios relacionados, estudio de su impacto (en la lucha anticorrupción, igualdad de género y estadísticas), pre-aviso de legislación, revisión reguladora, reunión viceministerial/gubernamental, presentación ante la Asamblea Nacional, hasta su promulgación
- Se tarda mucho tiempo en legislar un proyecto de ley, puesto que requiere de consulta y acuerdo sobre el mismo entre demasiado número de ministerios y agencias gubernamentales (entre cinco y siete meses como mínimo)
  - ▶ El autor del proyecto legislativo ha de **redactar y/o modificarlo reiteradamente en cada fase del procedimiento de legislación**, y necesita **aprender de memoria el modo de redacción de la moción**, ya sea un proyecto de enmienda o una tabla de comparación entre los artículos modificados y los vigentes. Además, no existen pautas establecidas, y por tanto, **difieren los patrones de redacción de artículos o enmiendas según el contenido del respectivo proyecto de 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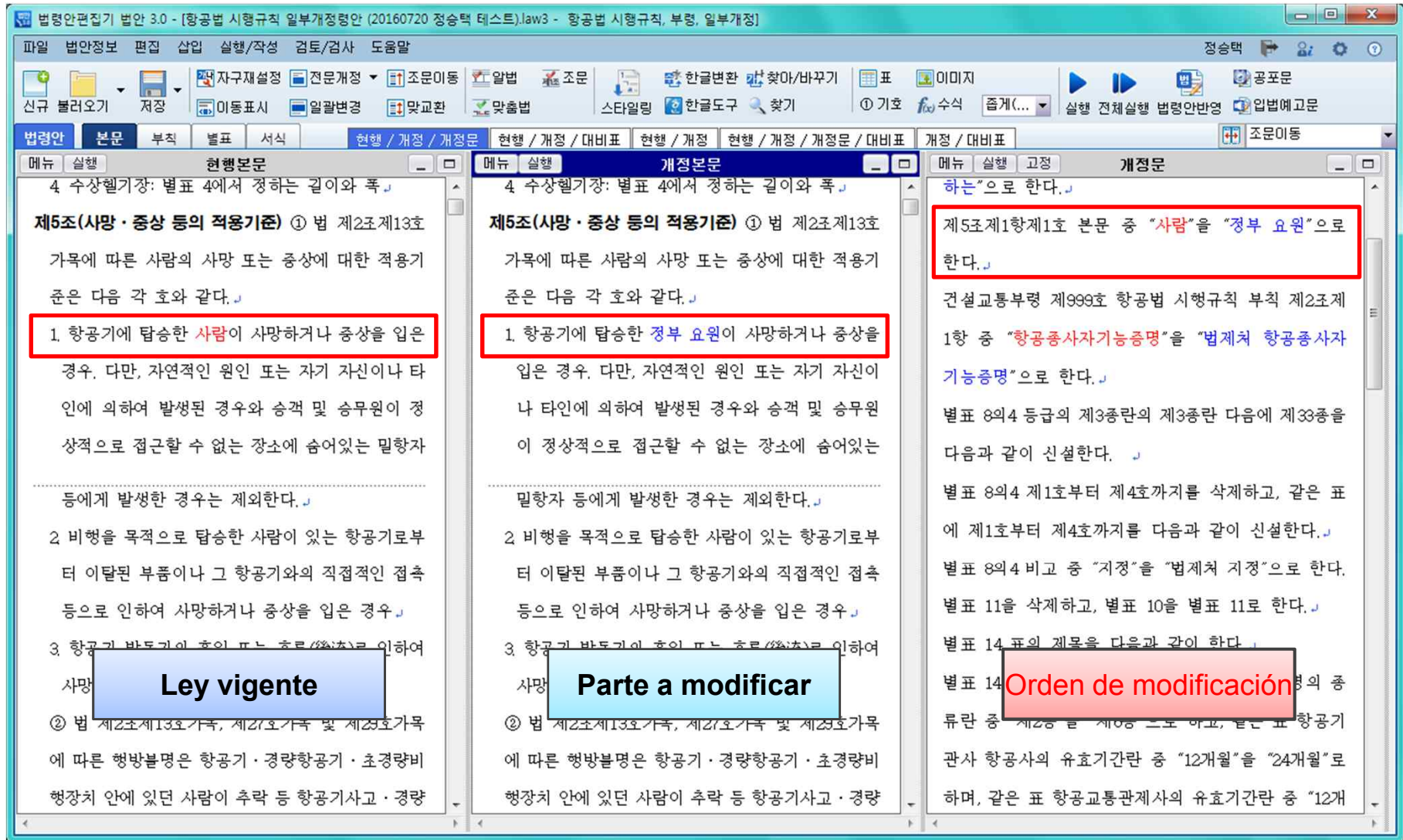
### Objetivos de desarrollo del programa

- **Minimización de la carga psicológica que supone el aprendizaje de memoria** del modo de redacción del texto de proyectos de enmienda o tablas de comparación entre los artículos modificados y los vigentes
- La **normalización del patrón de redacción de mociones** tales como de enmienda, o tablas comparativas entre los artículos modificados y los vigentes
  - ▶ permite **redactarlas de manera fácil, rápida y precisa**, sin que uno tenga que repetir el trabajo en cada etapa del proceso de legislación
- Mejora del servicio de información legal mediante una **actualización rápida y precisa de las LO promulgadas**

### 3. Redacción de un proyecto legislativo – abrir la ley u ordenanza a enmendar



# 4. Redacción automática de órdenes para hacer modificaciones





# 5. Redacción automática de tabla comparativa entre artículos modificados y vigentes

The screenshot displays a legal software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components:

- Top Bar:** Window title: 법령안편집기 법안 3.0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0720 정승택 테스트).law3 - 항공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Menu Bar:** 파일, 법안정보, 편집, 삽입, 실행/작성, 검토/검사, 도움말
- Toolbars:**
  - Left: 신규 불러오기, 저장, 맞춤법
  - Middle: 한글변환, 찾아/바꾸기, 표, 이미지, ① 기호, f/w 수식, 좁게(...)
  - Right: 실행, 법령안반영, 입법예고문
- Navigation Tabs:** 법령안, 본문, 부칙, 별표, 서식, 현행 / 개정 / 개정문, 현행 / 개정 / 대비표, 현행 / 개정, 현행 / 개정 / 개정문 / 대비표, 개정 / 대비표, 조문이동
- Main Content Area:**
  - Left Pane (현행본문):** Article 4 (항공법 시행규칙) Article 3 (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and Article 4 (착륙대의 길이와 폭). A blue box labeled "Ley vigente" is overlaid on the text.
  - Middle Pane (개정본문):** Article 4 (항공법 시행규칙) Article 3 (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and Article 4 (비행기 착륙장치의 길이와 폭). A blue box labeled "Parte a modificar" is overlaid on the text.
  - Right Pane (신·구조문대비표):** A comparison table between the existing and proposed articles. A red box labeled "Tabla de comparación entre artículos modificados y vigentes" is overlaid on the table.

## 6. Designación de la fecha de implementación de la regla suplementaria

법령안편집기 법안 3.0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0907 정승택 테스트).law3 - 항공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파일 법령정보 편집 삽입 부칙편집 실행/작성 검토/검사 도움말

신규 불러오기 저장 맞춤법 한글변환 한글도구 찾기 ① 기호 fvs 수식 좁게(...) 중전부칙 개정 법령안반영 입법예고문

법령안 부칙 부표 서식

현행 / 개정 / 개정문 현행 / 개정 / 대비표 현행 / 개정 현행 / 개정 / 개정문 / 대비표 개정 / 대비표

메뉴 실행

현행부칙

메뉴 실행

개정부칙

메뉴 고정

개정문

부 칙

Regla suplementaria

Art. 1 (Fecha de implementación) La presente regla se implementará a partir del día de su promulgación, a excepción de los artículos enmendados 3-1, 3-2, 4-3 y 9-2 que entrarán en vigor tres meses después de promulgada la regla y los artículos enmendados 6-1, 81-2 y 81-3 serán implementados tras el 1 de enero de 2017.

제2조(에 관한 적용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대한 특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5조(유효기간)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제6조(다른 법령의 폐지) 이 령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행일 작성

기본 시행일

공포한 날  특정한 날  경과한 날

공포한 날

단시시행일

선택	조문	시행일	삭제
<input type="checkbox"/>	제명		
<input type="checkbox"/>	제3조		
<input type="checkbox"/>	제3조제1호	공포 후 3개월	삭제
<input type="checkbox"/>	제3조제2호	2017년 1월 1일	삭제
<input type="checkbox"/>	제4조	공포 후 3개월	삭제
<input type="checkbox"/>	제4조제3호		
<input type="checkbox"/>	제6조제1항	공포 후 3개월	삭제
<input type="checkbox"/>	제6조제2항제1호	2017년 1월 1일	삭제
<input type="checkbox"/>	제9조제2호		
<input type="checkbox"/>	제16조의3제1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81조제2항	2017년 1월 1일	삭제
<input type="checkbox"/>	제81조제3항		
<input type="checkbox"/>	제290조의2제1호		
<input type="checkbox"/>	제999호제2조제...		

시행일 조문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호, 제6조제2항제1호, 제8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  특정한 날  경과한 날

2017년 1월 1일

<< 저장

>> 조문 작성

개정조문추출

추가

적용

닫기

▶ Se extrae automáticamente una lista de artículos modificados del texto de la ley enmendada

☞ Se designa la fecha de implementación por cada artículo

# 7. Ofrecimiento de conocimientos sobre legislación por títulos de artículos

The screenshot shows a legal database application window titled '법령안편집기 법안 3.1 -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The interface includes a menu bar, a toolbar with various icons, and a main content area. A search filter table is visible on the left, and the main text area displays the content of Article 11 of the Motor Vehicle Registration Ordinance.

분야	주제	세부내용
법령 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법령 문장의 중요성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개별 조와 합은 한 가지 주제로 구...	한 조가 한 문장으로 된 경우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개별 조와 합은 한 가지 주제로 구...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합을 구분...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개별 조와 합은 한 가지 주제로 구...	세부 주제별로 합을 구분한 경우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개별 조와 합은 한 가지 주제로 구...	절차에 따라 합을 구분한 경우

**제1절 통칙**

**제11조(등록요건)**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축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축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 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권리자

**Ofrecimiento de conocimientos sobre el sistema legal por títulos de artículos**

강화상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행정기관의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의미에서의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인허가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1) 제도인 영하고 있는

「해당실종수...」 제2항에서 수입업은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격상으로는 동일한 '금지-해제'의 구조를 갖지만, 단지 규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업은 등록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허가를 완화하여 등록 제도로 한 경우에는 인허가 제도의 하나라고 하겠다.



# 8. Revisión de errores en el texto de proyectos legislativos

The screenshot shows a software interface for drafting laws. The main window is titled '개정본문' (Revised Text) and contains the text of Article 11, Paragraph 1, regard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A table of contents is visible on the left, and an error log is at the bottom.

**Revisión del orden de títulos de artícul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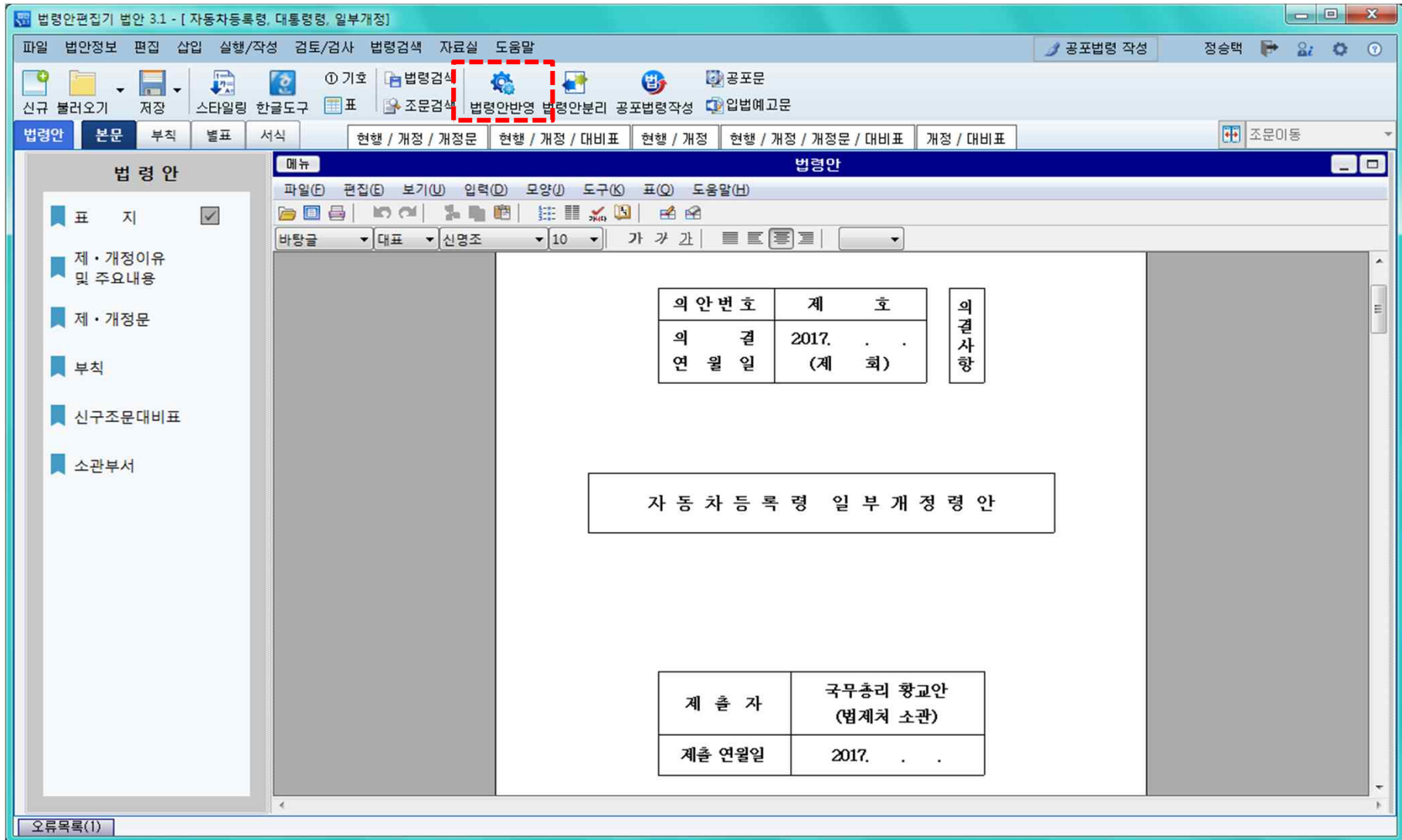
**Revisión del orden numérico de artículos**

**Revisión de artículos citados**

**오류목록(1)**

순번	오류유형	오류내용
1	누락	제31조제3항의 순번이 누락되었습니다.

# 9. Fin de redacción del proyecto legislativo



# 10. Almacenaje e impresión del proyecto legislativo

의안 번호	제 호	의결 사항
의결 연월일	2015. . . (제 회)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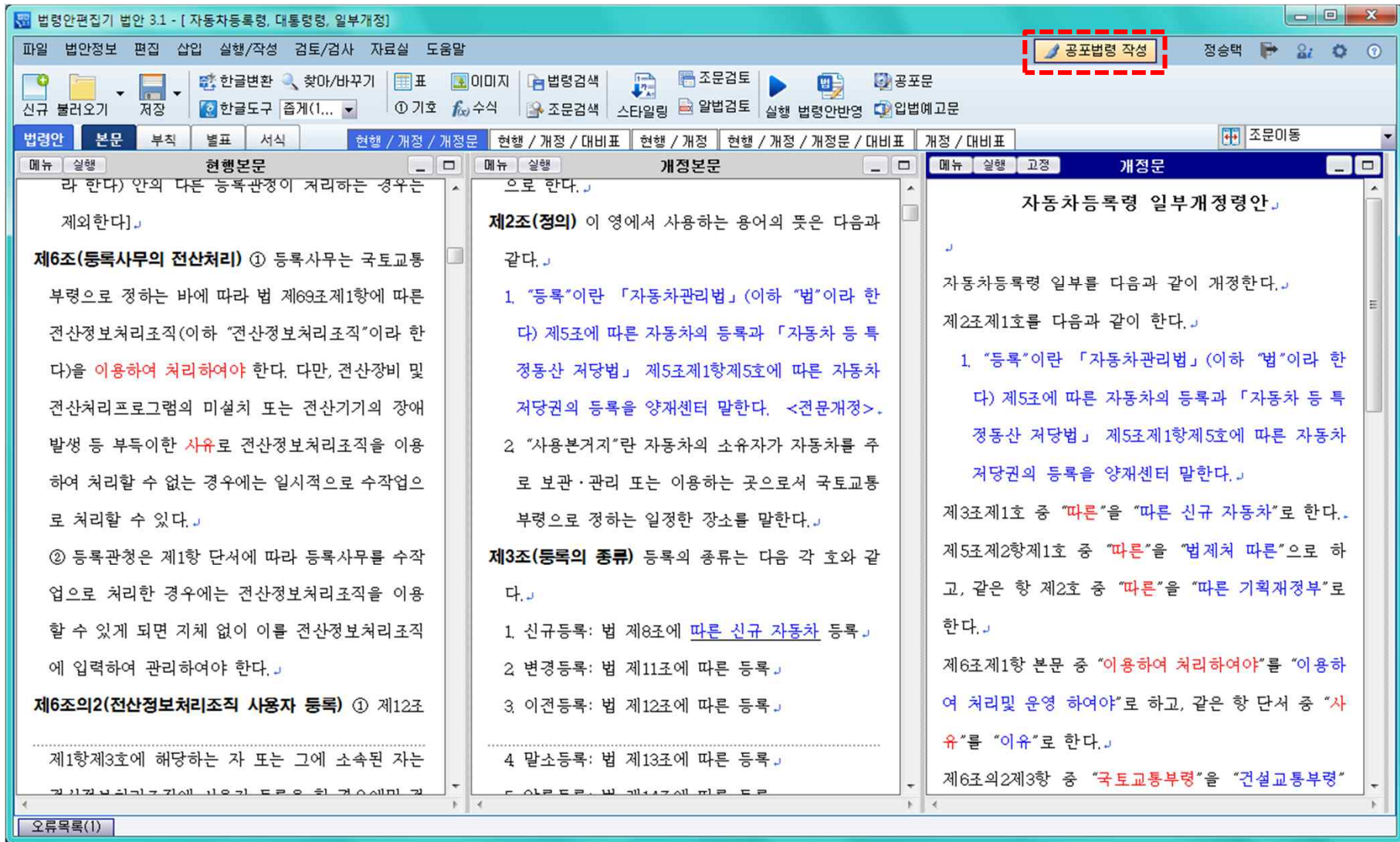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IV. Programa de actualización de leyes y ordenanzas (LO) promulgadas



# 1. Ejecutar el programa de actualización de LO promulgadas





## 2. Traer el contenido promulgado

The screenshot displays a software interface for editing legal documents. The main window shows a document titled "공포문" (Promulgation Notice) with the following text: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정은

2017년 12월 1일

국무총리 이철기

국무위원

행정각관부 장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개정한다.

제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 제30조,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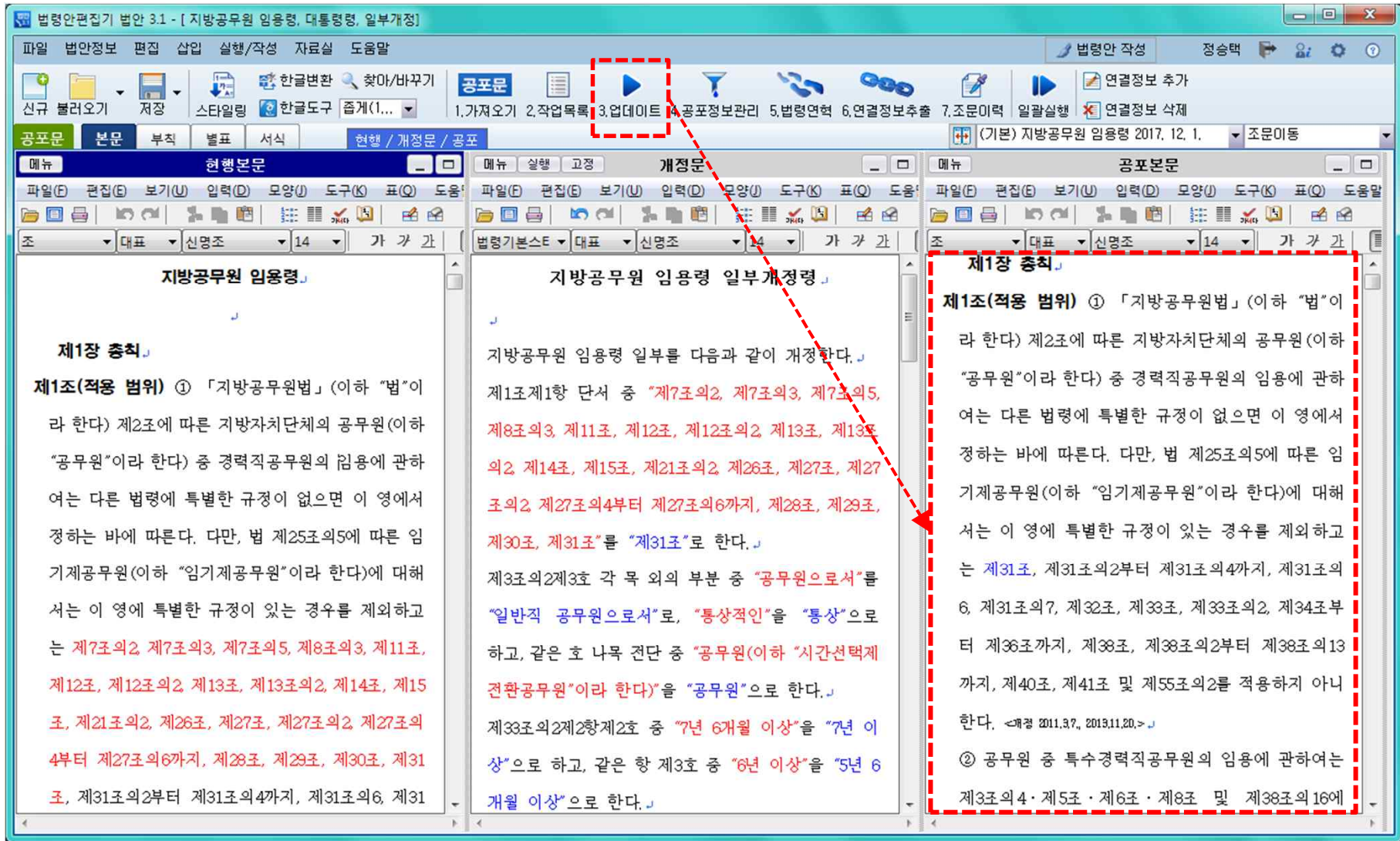
“문직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으로서”를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로, “통제관”을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The interface includes a menu bar with options like "파일", "법안정보", "편집", "삽입", "실행/작성", "자료실", "도움말". A toolbar contains icons for "신규", "열려오기", "저장", "스타일링", "한글변환", "찾아/바꾸기", "공포문", "1.가져오기", "2.작업목록", "3.업데이트", "4.공포정보관리", "5.법령연혁", "6.연결정보추출", "7.조문이력", "일괄실행", "연결정보 추가", "연결정보 삭제". A red dashed box highlights the "공포문" button and the "일괄실행" button. A red arrow points from the "공포문" button to the "일괄실행" button, with a pink box containing the text "Procesar de una vez".

A file explorer window is open in the foreground, showing a search for "정승택(2017) 검색". The search results list several files, including "관보게재안(공포문)", "관보게재안(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보게재안(지방공무원 임용령)", "심사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양재동 강의자료(법안 3.0 20170308)", and "소방시설법 시행령(관보게재문)".

### 3. Actualizar automáticamente las LO promulgadas



# 4. Enlazar los artículos citados en el texto a la información legal de referenc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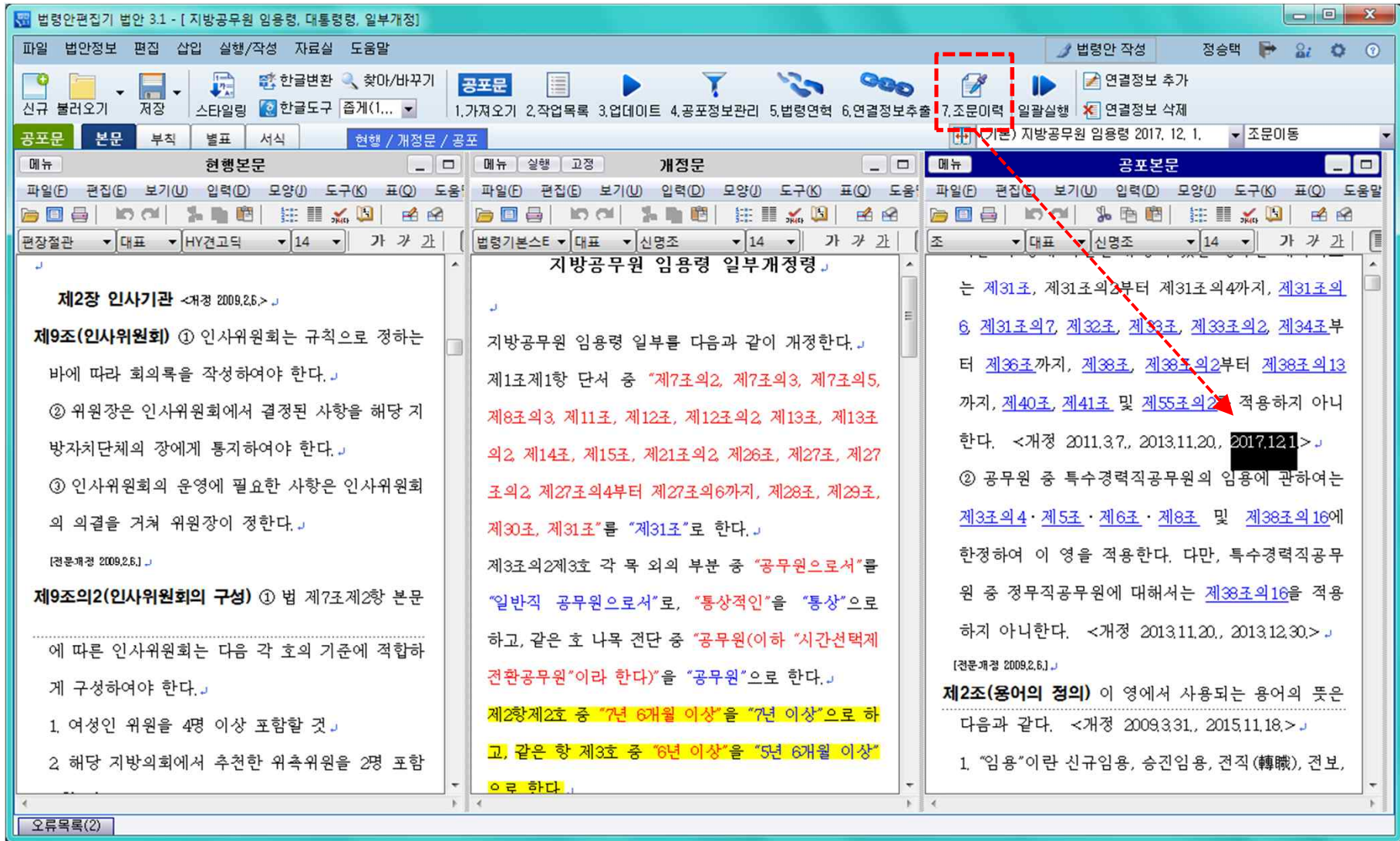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a legal software interface with a document editor and a dialog box for confirming link information. The dialog box contain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순번	대상조문	대상구문	연결법령명	연결조문	내용보기	삭제
1	제1조제1항	제31조의6	본문내	제31조의6	내용보기	삭제
2	제1조제1항	제31조의7	본문내	제31조의7	내용보기	삭제
3	제1조제1항	제32조	본문내	제32조	내용보기	삭제
4	제1조제1항	제33조	본문내	제33조	내용보기	삭제
5	제1조제1항	제33조의2	본문내	제33조의2	내용보기	삭제
6	제1조제1항	제34조	본문내	제34조	내용보기	삭제
7	제1조제1항	제36조	본문내	제36조	내용보기	삭제
8	제1조제1항	제38조	본문내	제38조	내용보기	삭제
9	제1조제1항	제38조의2	본문내	제38조의2	내용보기	삭제
10	제1조제1항	제38조의13	본문내	제38조의13	내용보기	삭제
11	제1조제1항	제40조	본문내	제40조	내용보기	삭제
12	제1조제1항	제41조	본문내	제41조	내용보기	삭제
13	제1조제1항	제55조의2	본문내	제55조의2	내용보기	삭제
14	제1조제1항	「지방공무원법」(이하...	지방공무원법	제2조	내용보기	삭제
15	제1조제1항	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내용보기	삭제
16	제1조제2항	제3조의4	본문내	제3조의4	내용보기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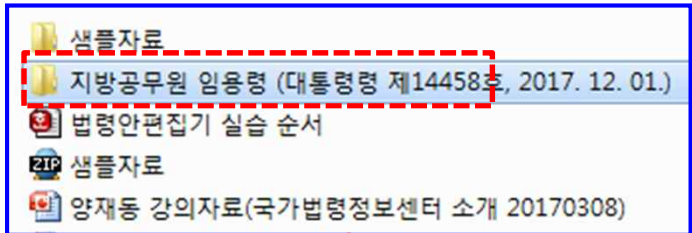
The dialog box also includes a checkbox for "자동으로 생성된 연결정보 제외" (Exclude automatically generated link information) and buttons for "적용" (Apply) and "닫기" (Close).



# 5. Añadir la fecha de promulgación al artículo enmendado



# 6. Guardar el contenido actualizado y promulgado



2017. 12. 1. 시행 (기본시행일)	2017-02-22
2018. 1. 1. 시행	2017-02-22
2018. 6. 1. 시행	2017-02-22

개정법령 본문	2017-02-22
별표 9	2017-02-22
부칙	2017-02-22
연혁	2017-02-22
제개정문	2017-02-22
참조 연결정보	2017-02-22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7., 2013.11.20., 2017.12.1.>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4·제5조·제6조·제8조 및 제38조의16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전문개정 2009.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5.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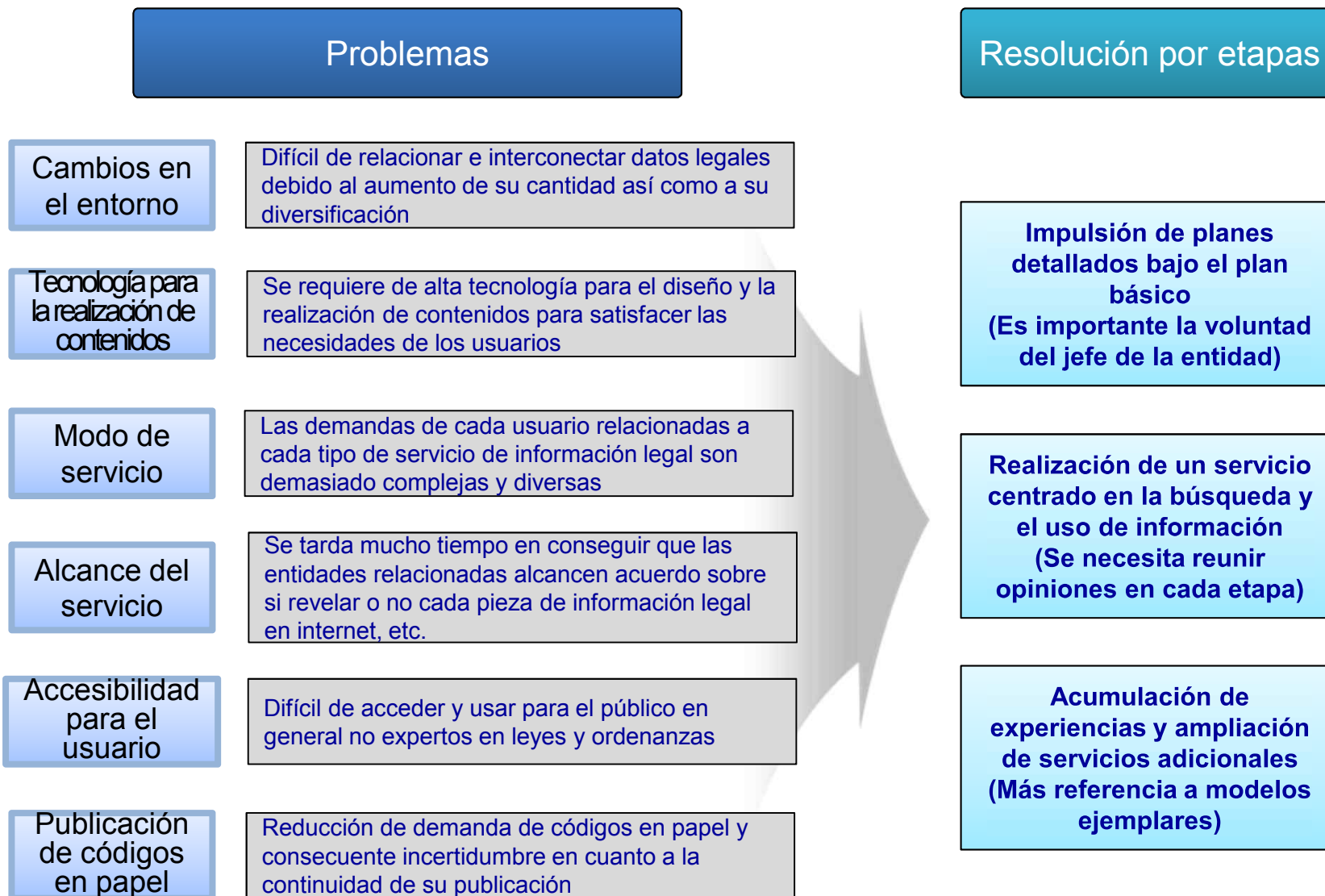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 V. Propuesta de soluciones a problemas y apoyo tecnológico ofrecido a un país extranjero





# 1. Soluciones a problemas surgidos en el proceso de desarrollo





## 2. Apoyo a Myanmar para la creación de su sistema de información legal

### ■ Presupuesto y duración del proyecto

- ▶ Aprox. 4.000 millones de wones (3.65 millones de dólares), 2015 a 2017 (3 años)

### ■ Contenido del proyecto

- ▶ En base al Sistema de Información Legal y el Sistema de Legislación Gubernamental de Corea del Sur:

- ① Desarrollar un sistema de información legal y crear una base de datos para Myanmar
- ② Formación de profesionales (envío de expertos coreanos a Myanmar e invitación de funcionarios y técnicos birmanos a Corea)
- ③ Transferencia de conocimientos prácticos sobre la operación, etc.

### ■ Contenidos actuales de información legal de Myanmar

- ▶ Según lo constatado, están compuestos por un total de 1.443 leyes (1,443 leyes en inglés, 1,443 leyes en birmano)

# Gracias



Jeong Seung Taek, Oficina de Información sobre  
Legislación, Ministerio de Legislación Gubernamental

Contacto: ☎ 044-200-6781, kangjust@gmail.com)